2022년 5월 aT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) 하노이지사 KATI수출뉴스

베트남, 라벨 미부착 한국 식품 판매사례 적발

2022년 5월 25일, 하노이지사

□ 키워드 :

○ 베트남, 현지 유통매장에서 라벨 미부착 한국 수입제품 판매사례 적발

- 베트남은 수입품에 대해 라벨을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 제품의 유통기한, 원재료 및 성분, 원산지 등 소비자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임

- 최근 현지 언론(SO HUU TRI THUE)에 따르면 한국산 건강기능식품, 화장품, 스낵류 등 다량의 제품에 라벨을 미부착한 상태로 판매하는 유통매장을 적발했다고 밝힘

- 위의 사례와 같이 정식 수입·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제품을 유통할 경우 밀수품으로 간주되며, 현지 위조 및 금지 물품의 생산/거래/유통에 관해 규정한 시행령(98/2020/ND-CP)에 의거 최대 100백만VND(5백만원)의 벌금형에 처해짐.

- 이 외에도 라벨의 내용이 모호하거나, 찢어지거나 색이 바래 라벨의 필수 내용을 읽기 어려운 경우, 라벨 및 문자의 크기, 표기 언어, 측정 단위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짐

- 이와 같이 베트남의 수입 제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은 현지 통관 당국의 주요 점검사항이며 현지에서 '안전' 키워드 관련 사항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함

○ (최근이슈) 베트남 라벨의 원산지 표기 기준을 수정한 개정안 발표

- 베트남 정부는 제품 라벨에 관한 《시행령 No. 43/2017/ND-CP》를 수정한 《시행령 No. 111/2021/ND-CP》를 공포하였으며, 해당 개정안은 2022년 2월 15일부터 발효됨

-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에는 [규정 15조. 원산지 표기]와 관련된 변경사항이 포함되었으며, 기존 규정문과 규정문의 항목별 비교 내용은 하기와 같음

《시행령 No. 111/2021/ND-CP》 규정 15조의 개정 전후 규정문 비교표

조항	개정 전 《시행령 No. 43/2017/ND-CP》	개정 후 《시행령 No. 111/2021/ND-CP》
15조 1항	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베트남이 가입했거나 서명한 협정 또는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, 상품의 원산지를 진실되고 정확하며 일관되게 스스로 식별하고 라벨을 부착해야 함	제조업자,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는 베트남에서 수출, 수입 및 제조된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법률 또는 베트남이 가맹한 국제 약속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진실하고 정확하며 적합하게 결정하여 라벨에 기재해야 함
15조 2항	라벨의 원산지 기재법은 다음과 같음: "~에서 가공", "생산국가", "~ 원산지", "~로부터 생산", "제조국가"를 국가 또는 지역명과 함께 표기해야 함. 상품이 생산되는 국가의 이름이나 지역은 약칭으로 표기해선 안 됨	라벨에 기재된 상품의 원산지는 다음 문구 중 하나로 표기해야 함 :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상품을 생산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이름을 "~에서 가공", "~에서 생산", "생산국가", "~로부터 생산" "~원산지", "~의 제품"과 함께 표기
15조 3항	-	해당 규정 15조 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품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, 상품이 최종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 장소를 표시해야 함. 이러한 장소명은 상품이 완성되기 위한 최종 단계가 이루어지는 국가 또는 지역명 뒤에 와야 하며, 다음 문구 중 하나 또는 이 구절을 혼합한 형태로 표현해야 함 : "~에서 조립된", "~에서 병 포장된", "~에서 혼합된", "~에서 마무리된", "~에서 포장된", "~에서 라벨링된"
15조 4항	-	상품이 생산되거나 상품의 최종 마무리 단계가 수행되는 국가의 이름 또는 지역은 약칭으로 표기해선 안 됨

○ 시사점

- 베트남의 경우 한류 열풍, 경제 소득 증대 등 영향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, '21년 약 7억5천만 달러 규모의 식품을 베트남으로의 수출을 기록할 정도의 주요 시장임

- 다만, 상기의 라벨링 규정 변경 사례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경우 아직 무역시장 개방 역사가 짧아 투자, 무역, 관세 등의 법규가 수시로 변동되고 이 내용이 수출입 업체에 적시에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

* https://www.kati.net/을 통해 국가별 식품 트렌드, 비관세장벽, 규정 등 정보 확인 가능

○ 출 처

- 98/2020/NĐ-CP(현지 위조 및 금지 물품의 생산/거래/유통에 관해 규정한 시행령) thuvienphapluat.vn

- No. 111/2021/ND-CP(베트남 라벨의 원산지 표기 기준을 수정한 개정안) thuvienphapluat.vn

- Hệ thống siêu thị hàng hóa Hàn Quốc Ms Thao-Seoul Mart (Đông Anh, Hà Nội): Sản phẩm không tem nhãn phụ được bày bán tràn lan. sohuutritue.net.vn. '22.4.25.